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2018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19 년 2 월 27 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현 만 (서명)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을 전제로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보수체계가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규정』 제 12 조 ①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위원 변경 시까지 연속하여 재임이 가능합니다. 황건호 위원은 2019 년 3 월 임기 만료이며 현재(2018 년 12 월말)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34 개월이며, 김병일 위원은 2019 년 3 월에 임기 만료이며 현재(2018 년 12 월말)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35 개월 입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에 의거 위원의 구성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하되,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 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총 3 인(황건호,김병일,최현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 인(황건호,김병일)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황건호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대표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금융회사 출신여부	등	약력
황건호	이사	사외이사	유		'76~'99 대우증권 부사장 '99~'03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04~'09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09~'12 한국금융투자협회장 '12~'14 서울대 경영학 초빙교수 '07~현재 이화여대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15~현재 서강대 경영학 초빙교수 '16~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김병일	이사	사외이사	무		'84~'87 총무처, 국세청 행정사무관 '87~'94 재무부 행정사무관 '95~'99 재정경제원(부)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99~'07 (주)대현 상임감사 '14~'15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 위원회 위원 '15~'18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07~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16~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최현만	이사	사내이사	유		'89년~'97년 동원증권 지점장 '97년~'99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이사 '99년~'12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12년~'16년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07 ~ (現) Mirae Asset Securities (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15 ~ (現)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 무이사(비상근) '16년~(現)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 석부회장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 1)}	임기 만료일
황건호	사외	위원장	16.3.25	19.3 (정기주주총회일)
김병일	사외	위원	16.2.3	19.3 (정기주주총회일)
최현만	사내	위원	16.11.4	19.3 (정기주주총회일)

주 1)최초 선임일 기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당사의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 1.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해당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개최된 2018년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2018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2019년 1월 31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2018년 성과보수 지급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개최된 2019년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 20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개최된 2018년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정의와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 비율, 이연지급기간, 이연지급액환수 등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성과보수 총액의 50%를 이연지급 하며, 이연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의 보수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동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합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미래에셋대우는 당사의 변동보상의 설계 및 조정, 지급형태 및 방식 등 지배구조법 및 당사의 성과관련 규정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31일 개최된 2019년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대한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규모 및 자본의 규모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 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개최된 2019년 제 2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 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은 한국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내 모든 조직 및 해외사무소에 적용됩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제 44 조에 따른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개최된 2018년 제 3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수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변동보수 대상자, 2018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26명	대표이사, 부문대표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6명	운용 및 IB 부문 인력

[변동보수 대상자, 2017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34명	대표이사, 부문대표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62명	운용 및 IB 부문 인력

10) 기타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당사의 보수위원회 규정 제 4 조에 의거, 위원장(현재 황건호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 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8 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 6 조에 의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 때,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출석위원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18 년에는 총 4 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3 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성과보수 및 이연대상자를 결정하였고, 성과보수 집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성과보수제도가 회사의 재무상황,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는지 평가 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 50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1 월 31 일(수) (오전 8 시)

[안건 통지일 : 2018 년 1 월 26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최현만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2017 년 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 50 기 제 2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3 월 6 일(화) (오전 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8 년 2 월 28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최현만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50 기 제 3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6 월 28 일(목) (오전 10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8 년 6 월 22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최현만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2018 년 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50 기 제 4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8 월 30 일(목) (오후 3 시)

[안건 통지일 : 2018 년 8 월 24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최현만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사내이사 성과보수 지급(案)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사내이사 중 조용기 사내이사의 성과보수 지급에 대한 안건임.

4) 평가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보수위원회가 내규에서 정한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의사결정 사항이 절차상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 절차상 적정성을 감독하며, 보수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을 통하여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보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수익, 손익 영업목표 달성률 등 정량항목과 시장상황, 경쟁사 실적, 총위험액 대비 수익률 등 정성항목을 주요 성과측정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지표에 따른 결과를 부서/개인별 상여율에 연동시켜 성과측정과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담당조직별 조직평가(담당 부문/본부 목표달성·평가등급 반영)를 적용하였으며, 직원의 경우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하여 업적평가(수행한 업적 기술), 역량평가(기본 역량, 직무역량, 정책역량)의 두 가지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은 회사의 경영실적과 조직성과보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담당조직(사업부문/본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직원의 경우 각 조직별 손익 및 평가 등을 기준으로 조직의 성과보상 재원을 결정한 후, 상기 명시된 개인 평가결과를 반영한 기여도에 따라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보수액 중 5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현금 및 주식 등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법령이나 규정,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연된 성과보수액을 차감 및 환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사유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보수위원회에 상정하여 차감 및 환수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 및 주식 등(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이연하지 않고 즉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연되는 금액은 주식 등(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이연대상자의 경우 성과보수 총액의 50%는 당해년도에(T년) 현금으로 즉시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주식 등(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으로 3년간 이연지급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미래에셋대우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당사의 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2018 년 보수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인의 성과와 보상간의 인과관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2018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당해년도 (2018 년)	4,853.3	5,850.0	0.83	4,564	1.1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당해년도 : 2018.01~2018.12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당해년도 : 2018.01~2018.12

[2017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당해년도 (2017 년)	4,355.7	6,647.5	0.66	4,659	0.9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당해년도 : 2017.01~2017.12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당해년도 : 2017.01~2017.12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2018 년]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수석 매니저	선임 매니저	매니저	대리	기타 ²⁾
당해년도 (2018 년)	보수총액	391.3	1,363.0	1,736.3	958.2	166.2	238.4
	성과보수액	172.4	409.8	482.9	225.4	39.0	146.2

주 1)작성기준 :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주 2)영업점 PB 전문직 등

[2017 년]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수석 매니저	선임 매니저	매니저	대리	사원
당해년도 (2017 년)	보수총액	356.7	1,251.9	1,565.6	493.9	458.1	185.9
	성과보수액	175.6	302.5	408.5	132.9	61.5	40.1

주 1)작성기준 :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2018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3)}	
				이연지급대상	
당해년도 (2018 년)	임원	126	218.9	312.9	154.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46	44.4	99.9	49.2

주 1) 해당년도중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액' 으로 분류

주 3) 당해년도 : '18.1 월 ~ 12 월(이하 동일)

[2017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3)}	
				이연지급대상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134	180.3	270.8	135.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62	59.3	119.9	59.9

주 1) 해당년도중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액' 으로 분류

주 3) 당해년도 : '17.1 월 ~ 12 월(이하 동일)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2018 년]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 1)}	주식연계 상품 ^{주 2)}	기타	
당해년도 (2018 년)	임원	312.9	158.0	-	154.9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99.9	50.7	-	49.2	-

주 1) 주식 : 2018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

주 2) 주식연계상품 :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

[2017 년]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 1)}	주식연계 상품 ^{주 2)}	기타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270.8	135.5	-	135.3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19.9	59.9	-	59.9	-

주 1) 주식 : 2017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

주 2) 주식연계상품 :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2018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당해년도 (2018 년)	임원	290.7	1.0	289.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92.6	2.1	90.5

주 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2017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244.0	58.6	185.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30.9	29.7	101.2

주 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2018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당해년도 (2018 년)	임원	290.7	1.0	6.3	283.4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92.6	2.1	3.7	86.8	-

[2017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244.0	2.7	33.1	208.1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30.9	1.5	21.4	108.0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2018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290.7	154.9	104.7	31.1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92.6	49.2	31.5	11.8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18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18 년(t 기) 발생분, '17 년(t-1 기) 발생분, '16 년(t-2 기), '15 년(t-3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2017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244.0	135.3	42.1	52.7	13.9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30.9	59.9	23.2	39.5	8.2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17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17 년(t 기) 발생분, '16 년(t-1 기) 발생분, '15 년(t-2 기), '14 년(t-3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성과조정

[2018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 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직접적 조정 ^{주 2)}	간접적 조정 ^{주 3)}	
당해년도 (2018 년)	임원	2.2	-	2.2	290.7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2.4	-	2.4	92.6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2017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 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직접적 조정 ^{주 2)}	간접적 조정 ^{주 3)}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	-	-	244.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130.9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2018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18년)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2017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17년)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